

(붙임2)

2026년 건설업 노동 관련 각종 요율표

○ 건강보험료율

년 도	보 험 료 율	사업주(50%)	근로자(50%)
2024	보수월액 × 7.09%	3.545%	3.545%
2025	보수월액 × 7.09%	3.545%	3.545%
2026	보수월액 × 7.19%	3.595%	3.595%

□ 노인장기요양보험 : 건강보험료의 13.14%(사용자·근로자 각각 부담)

○ 국민연금료율

년 도	요 율	사업주(50%)	근로자(50%)
2024	표준소득월액의 9%	4.5%	4.5%
2025	표준소득월액의 9%	4.5%	4.5%
2026	표준소득월액의 9.5%	4.75%	4.75%

○ 고용보험료율 산정기준

사 업 별	보 험 료 율	산 정 기 준
실업급여 (공동 부담)	1.8%	사용자 부담 0.9% 근로자 부담 0.9%
고용안정사업 · 직업능력 개발사업 (사용자 부담)	0.25%	상시근로자 150인 미만
	0.45%	상시근로자 150인 이상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
	0.65%	상시근로자 150인 이상 1,000인 미만 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미해당
	0.85%	상시근로자 1,000인 이상으로 우선 지원 대상기업 미해당 기업 및 국가, 지자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

□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전년과 동일

※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이 다음단계로 인상될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 적용(고용산재보험료 시행령 제12조제4항)

※ 건설기계 노무제공자(특고) : 실업급여 1.6%만 적용(고용산재보험료 시행령 제56조의6)

○ 산재보험료율

년 도	2022	2023	2024	2025	2026	
일반건설공사(갑)	3.7%	3.7%	3.56%	3.56%	3.56%	
일반건설공사(을)						
중건설공사						
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	(출퇴근재해 0.1% 포함)	(출퇴근재해 0.1% 포함)	(출퇴근재해 0.06% 포함)	(출퇴근재해 0.06% 포함)		(출퇴근재해 0.06% 포함)

□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3항, 제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사업종류별 보험요율을 고시함

※ 건설기계 노무제공자(특고) : 3.46%(출퇴근재해 0.06% 포함)

○ 노무비율

년 도	2022	2023	2024	2025	2026	
일반건설공사(갑)	27%	27%	27%	27%	27%	
일반건설공사(을)						
중건설공사						
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	(30%)	(30%)	(30%)	(29%)		(29%)

□ ()안은 하도급 노무비율

□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고시함

○ 건설업 월평균임금

년 도	건설업 월평균임금
2022	4,438,528원
2023	4,647,165원
2024	4,786,620원
2025	4,806,267원
2026	4,798,427원

□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시행령」 제2조 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해 고시함

○ 최저임금

년 도	최저임금		
	시간급	일급(8h)	월급(209h)
2023	9,620	76,960	2,010,580
2024	9,860	78,880	2,060,740
2025	10,030	80,240	2,096,270
2026	10,320	82,560	2,156,880

□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및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[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%(상여금), 1%(현금성 복리후생비) 초과분]

○ 장애인 고용의무대상 사업주 범위 및 고용부담기초액

년 도	사업주 범위 (공사실적액)	고용부담기초액 (1인당/월)
2022	98억 6천 3백만원 이상	1,149천원
2023	98억 6천 3백만원 이상	1,207천원
2024	98억 6천 3백만원 이상	1,237천원
2025	106억 8천만원 이상	1,258천원
2026	106억 8천만원 이상	1,295천원

□ 2026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: 민간기업 3.1%

□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장애인고용 의무적용대상 공사실적액을 고시함

○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비율, 석면피해분담금률

년 도	임채부담금비율	석면피해분담금률
2022	0.6/1,000	0.03/1,000
2023	0.6/1,000	0.04/1,000
2024	0.6/1,000	0.06/1,000
2025	0.6/1,000	0.06/1,000
2026	0.9/1,000	0.06/1,000

□ 「임금채권보장법」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고시함(고용·산재보험료 보수총액 기준)

□ 「석면피해구제법」 제32조제2항에 따라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고시함